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38호 2017. 10. 27.(금)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공 고】

제2017-1762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2017-179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제2017-179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고 시】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개 정 사 항	개 정 내 용	관 련 항 목
1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산출기준으로 개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4항
2	대부료 납기 등의 납기 등 이자율 조항	연3프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제2,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의2제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3조제1항
3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과 중복 조항으로 삭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3조2
4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2003년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7. ~ 2017. 11. 03. (7일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거 7일간 공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3일까지 공주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68 FAX : 041-840-231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경우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제35조제4항 중 “연 3퍼센트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연 3퍼센트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洞)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

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로 한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대부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u>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
적

2. 부지의 경우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
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
적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삭제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생략)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의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3. (생 략)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03년12월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적용하여 부과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2.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洞)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매각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위 호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

5.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로 한다.(조문 신설 2014.12.15.)

공주시 공고 제2017-179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공 주 시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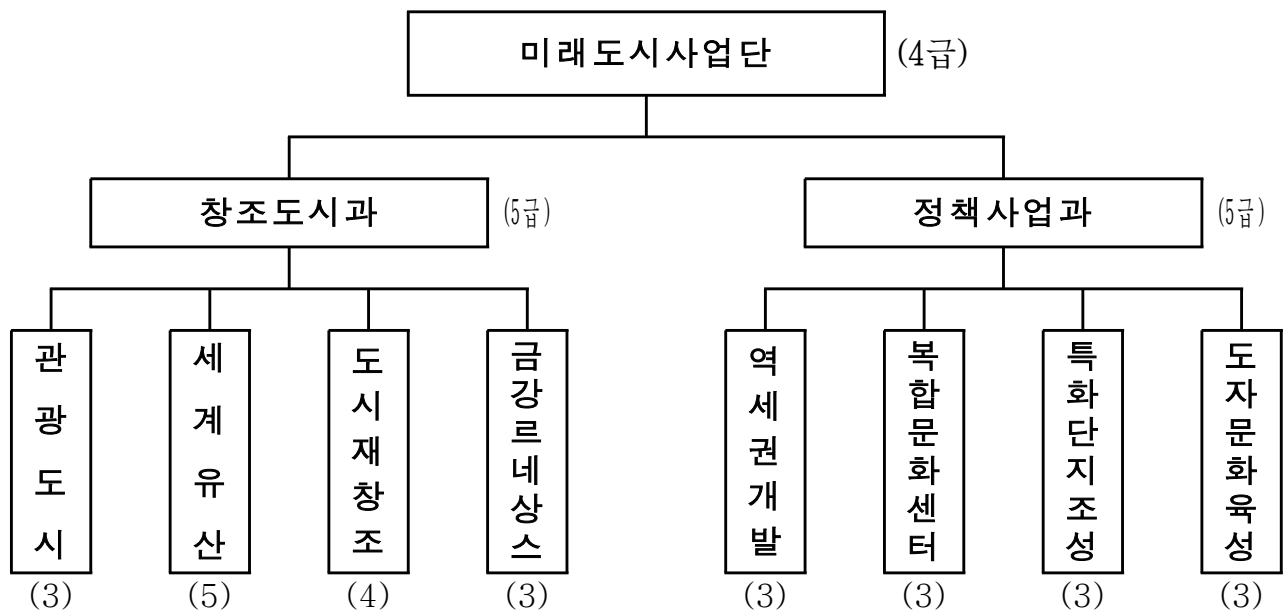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규칙에 적용되어 있는 관련 중앙부처 명칭을 정정하는 부칙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존속기한 연장 : 2018. 1. 1. ~ 12. 31. (1년간)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 (변경없음)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사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958					
3 급	1	1				
4 급	6	3	1	2		
5 급	51	26	2	4	3	16
6 급 이 하	900					
별 정 직 계	2					
6 급 상 당 이 하	2					
연 구 직 계	7					
연 구 관	-					
연 구 사	7					
지 도 직 계	30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70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과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공주시”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충청남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세범처벌절

차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한다.

④ 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및 3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옥룡동주민센터”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봉황로 123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반 포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사 곡 면
공주시 신평보건지소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1-11	신 풍 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리, 연종리, 세동리, 동해리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1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247-2	신흥1·2리, 오룡리, 초봉리, 주봉 1·2리, 만수리, 운암리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 학1·2리, 운곡리, 견동리, 국동리, 유하리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안영리, 덕지리, 화정리, 남산리
화현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현리, 경천리, 금대리, 상성리, 월곡리, 죽곡리, 향지리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약로 395	구왕리, 내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1·2리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리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리, 하신리, 온천1·2리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동, 무릉동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리, 내문리, 산성리, 월산리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90	장원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석송리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상용리, 화봉1·2리, 전평리, 북계1·2리, 평정1·2리, 의당면 오인리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리, 죽당리, 안양리, 오동리, 봉현리, 보흥리, 어천리, 방흥리
귀산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59-4	귀산1·2리, 동곡리, 반촌리, 신웅리, 내산1·2리, 한천리, 목천1·2리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리, 회학리, 가교리, 월가리, 유룡리, 부곡리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51	대룡리, 입동리, 용수리, 청흥리, 봉갑리, 조평리, 쌍대리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152	평소리, 영정리, 선학리, 화흥리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25조제2항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종	직급			
본청	미래도시사업단	일반직	4급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장

공주시 공고 제2017-179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 인력, 읍면동 복지허브화 인력을 증원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규칙에 적용되어 있는 관련 중앙부처 명칭을 정정하는 부칙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및 팀 조정 사항

구 분	본 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 회 사무국
	국단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현 행	3	25 (113)	2소6과 (27)	3 (11)	1 (5)	9 (28)	6 (2)	1 (2)
개 정	3	25 (115)	2소6과 (27)	3 (11)	1 (5)	9 (28)	6 (4)	1 (2)
증 감	-	(2)	-	-	-	-	(2)	-

※ ()는 팀 수 / 신설팀 : 4개팀[브랜드운영팀(미디어담당관), 평생학습관팀(교육체육과) 총무팀, 맞춤형복지팀(옥룡동)]

나. 팀 변동 사항

① 팀 신설사항 (+ 4)

정원관리기	부서	현행	개편	증감팀수	비고
본청 (증 2)	미디어담당관	미디어정책, 공보, 정보화, 통신	미디어정책, <u>브랜드운영</u> , 공보, 정보화, 통신	1	팀신설
	교육정책과	교육정책, 평생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	교육정책, 평생교육, <u>평생학습관</u> , 체육진흥, 체육시설	1	팀신설
읍면동 (증 2)	옥룡동	-	<u>총무, 맞춤형 복지</u>	2	팀신설

② 팀 명칭변경

정원관리기	부서	현행	개편	증감팀수	비고
직속기관	건강과	건강증진, 정신건강, 방문보건, 모자보건, <u>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u>	건강증진, 정신건강, 방문보건, 모자보건, <u>환경성건강센터</u>	-	팀명칭변경

미디어담당관 (팀 신설)	교육체육과 (팀 신설)																												
브랜드운영팀	평생학습관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정)</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미디어정책</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미디어정책</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보</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브랜드운영</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정보화</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보</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통신</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정보화</td> </tr> <tr>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통신</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40px;">4</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40px;">5</td> </tr> </table>	(기존)	(조정)	미디어정책	미디어정책	공보	브랜드운영	정보화	공보	통신	정보화		통신	4	5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정)</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교육정책</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교육정책</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생교육</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생교육</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체육진흥</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생학습관</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체육시설</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체육진흥</td> </tr> <tr>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체육시설</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40px;">4</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40px;">5</td> </tr> </table>	(기존)	(조정)	교육정책	교육정책	평생교육	평생교육	체육진흥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체육진흥		체육시설	4	5
(기존)	(조정)																												
미디어정책	미디어정책																												
공보	브랜드운영																												
정보화	공보																												
통신	정보화																												
	통신																												
4	5																												
(기존)	(조정)																												
교육정책	교육정책																												
평생교육	평생교육																												
체육진흥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체육진흥																												
	체육시설																												
4	5																												
건강과 (팀 명칭변경)	2018 읍면동 복지 허브화(옥룡동) (팀 신설)																												
환경성건강센터팀	총무팀, 맞춤형복지팀																												

(기존)	(조정)	
건강증진	건강증진	
정신건강	정신건강	
방문보건	방문보건	
모자보건	모자보건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센터	환 경 성 건 강 센 터	
5	5	

옥룡동장

```

graph TD
    A[옥룡동장] --> B[총무(+복지)]
    A --> C[맞춤형복지]
  
```

* 맞춤형복지팀 : 권역형(옥룡, 중학, 금학, 응진)

다. 주요 정원 변동 사항

(단위 : 명)

정원관리 기 관	부 서	기 존	변 경	증감 인원	비 고
총 계				증 14 감 14	
본 청 (△ 2) (증 6 감 8)	인 사 담 당 관	15	15	-	◦ 위생 8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 사무운영 8 +1 (사무직렬 강화)
	미 디 어 담 당 관	17	19	+2	◦ 행정·전산 6 +1, 행정 8 +1 ↳ 브랜드사업 활성화 대비 정원 반영
	감 사 담 당 관	16	15	△1	◦ 사무운영 8 -1 ↳ 위생직렬 공공시설 재배치에 따른 사무운영 직렬 부서 이관
	사 회 과	25	25	-	◦ 행정·사회복지 6 +1 } 직급 조정 ◦ 행정·사회복지 9 -1 }
	복 지 지 원 과	24	23	△1	◦ 행정·시설 8 -1 (과원조정 → 산림과 이관)
	회 계 과	21	21	-	◦ 행정 6 -1 } 직급 조정 ◦ 행정·전산 8 +1 }
	세 무 과	29	28	△1	◦ 행정 7 -2 ↳ 과원 조정(중학동, 도시정책과로 이관) ◦ 행정·세무 8 +1 ↳ 정안면으로부터 흡수 (직렬 추가)
	문 화 관 광 과	21	20	△1	◦ 행정 9 -1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이관
	문 화재과	19	20	+1	◦ 행정 6 -1 (과원 조정 → 미디어담당관 으로 정원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녹지·시설 7 +1 (문화재보수사업 강화 ← 산림과로부터 정원 흡수) ◦ 위생 8 +1 (공공시설 인력 재배치)
	안 전 관 리 과	26	2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농업 6 -1 (과원 조정 → 농정유통과로 정원 이관)
	기 경 제 업 과	19	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회복지 9 +2 ↳ 고용복지+센터 운영 반영 / 기능인력 재배치) ← 읍면동에서 흡수
	산 립 과	19	2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녹지 7 -1 (과원 조정) ↳ 문화재과로 이관 ◦ 행정·시설 8 +1 (복지지원과로부터 흡수) ◦ 위생 9 +1 (중학동으로부터 흡수)
	도 정 책 과	16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녹지 7 +1 ↳ 신규행정수요-조정 인력 증원 / 기능인력 재배치 ◦ 행정·시설 8 : 과원 조정 ↳ 직렬 조정 후 건강과로 정원 이관
	허 가 과	25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이인면으로 정원 이관) ◦ 시설 7 +1 (토지과로부터 정원 흡수) ↳ 개발행위 업무 기능 보강
	교 통 과	21	2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탄천면으로 정원 이관)
	환 경 자 원 과	44	4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운영 8 -1 ↳ 유구읍으로 정원 조정
	토 지 과	19	1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7 -1 ↳ 과원 조정 / 허가과로 정원 이관
직속기관 (+ 2) (증 3 감 1)	건 강 과	22	2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간호 8 +1 (도시정책과로부터 흡수) ↳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증가(기간제 근로자 사용 감소분) ◦ 위생 8 +1 (옥룡동으로부터 흡수)
	농 유 통 과	23	2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농업 6 +1 ◦ 행정·전산 8 -1 ◦ 행정·농업 9 +1 : 농산유통(농산물 판로 개척) 강화를 위한 정원 반영
	축 산 과	16	1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 과원 조정 후 농정유통과 정원 이관
사업소 (+ 4) (증 4)	문 화 시 설 사 업 소	24	2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7 +1 (문화체육시설, 고마 환경개선) ◦ 위생 9 +1 (문예회관, 연정국악원 등 환경개선) (탄천면, 금학동으로부터 흡수)
	복 지 시 설 사 업 소	13	1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9 +1 (이인면으로부터 흡수)
	시 도 서 관	15	1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9 +1 (월송동으로부터 흡수)

읍면동 (△4) (증 1 감 5)	유 구 읍	22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8 -1] 직급 조정 ◦ 행정 9 +1] <li style="padding-left: 20px;">↳ 행정직의 사회복지직 역할 수행 ◦ 기계운영 8 +1 <li style="padding-left: 20px;">- 환경자원과로부터 정원 흡수 ◦ 기계운영 9 -1 <li style="padding-left: 20px;">- 자연감소분 활용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직렬 조정 후 정원 이관
	이 인 면	13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허가과로부터 정원 흡수) ◦ 위생 9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탄 천 면	13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교통과로부터 정원 흡수) ◦ 위생 9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반 포 면	13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농업·환경·시설 5 +1 ◦ 행정·농업·시설 5 -1 <li style="padding-left: 20px;">↳ 동학사 상가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직렬 보강
	정 안 면	15	1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8 -1 <li style="padding-left: 20px;">(과원 조정 / 세무과로 정원 이관)
	우 성 면	16	1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농업 8 -1 <li style="padding-left: 20px;">(과원 조정 / 금학동으로 이관)
	사 곡 면	14	1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li style="padding-left: 20px;">(과원 조정 / 고용복지+센터 정원 반영)
	신 풍 면	14	1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9 -1 <li style="padding-left: 20px;">(과원 조정 / 고용복지+센터 정원 반영)
	중 학 동	10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7 +1 (세무과에서 이관) ◦ 위생 9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금 학 동	10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농업 8 +1 <li style="padding-left: 20px;">(과원 조정 / 우성면으로부터 흡수) ◦ 위생 7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옥 룡 동	14	1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회복지 6 +1 ◦ 행정 9 +1 <li style="padding-left: 20px;">(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정원 조정 / 기능인력 재배치) ◦ 위생 9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월 송 동	12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9 -1 (공공시설로 인력 재배치)

라. 공무원 총 정원

□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9조 제1항 별표 3) :

998명 (총 정원 변동 없음)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계	일반직·연구직·지도직(99% 이상)							정무직·별정직 (1% 이내)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별정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998	958	7	-	7	30	3	27	1	2
개 정	998	958	7	-	7	30	3	27	1	2
증 감	-	-	-	-	-	-	-	-	-	-

○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958	1	6	51	250	288	225	137
개 정	958	1	6	51	251	286	225	136
증 감	-	-	-	-	1	-	-	△1

○ 연구직 및 지도직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연구 직			지 도 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7	-	7	30	3	27
개 정	7	-	7	30	3	27
증 감	-	-	-	-	-	-

○ 별정직 정원 책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소계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2	1	1	-	-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	행	998	531	17	169	52	229
개	정	998	529	17	171	56	225
증	감	-	△2	-	2	4	△4

마. 기타사항 (단순 직렬 조정)

- 유구읍 : 행정 9 → 사회복지 기능 수행 표시
- 이인면 : 사회복지 8 -1 → 행정·사회복지 8 +1
- 계룡면 : 행정·사회복지 9 -1 → 행정 9 +1 (사회복지직 역할 수행)
- 중학동 : 사회복지 9 -1 → 행정·사회복지 9 +1 (직렬 추가 조정)
- 시민봉사과(행정 8), 응진동(행정 8), 월송동(행정 9) : 시간선택제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70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 총괄, 공주시 상징물(BI, CI, 마스코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4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종전의 제25호) 중 “공보”를 “브랜드 운영, 공보”로 한다.

제12조제13호 중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조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금 배정

제15조제4호 중 “수립 및 자금 배정”을 “수립”으로 한다.

제16조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랑한 시민 생활을 영위할”을 “시민체육의 진흥으로 체력증진, 건강한 정신 함양 및 시민생활을 할”로, “지원하는데”를 “지원하는 데”로 하

고, 같은 조 제20호 중 “시민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 ,수도과장,토지과장”을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 토지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경제과장, 환경자원과장,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경영안정”으로, “기업 활동”을 “경제인 활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9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마을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0.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편리”를 “편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증진하고”를 “증진하며”로 한다.

제26조제3호 및 제7호 중 “사무”를 각각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 중 “사무”를 각각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 중 “교통행정”을 “교통행정, 교통안전, 차량관리”로 한다.

제27조제6호 중 “사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금학동생태공원”을 “금학생태공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책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책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3호로 한다.

제36조제15호 중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환경성건강센터”로, “환경자원과”를 “산림과”로 한다.

제37조 중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를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으로”로, “농촌진흥과장 ·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를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8호 중 “사업 관련 업무”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6호 중 “정책”을 “정책, 농업 지원, 농업유통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2호 중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으로, 같은 호 및 제23호 중 “기업”을 각각 “기업, 마을 기업”으로 한다.

제4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마시설 관리 운영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9조제2항 전단,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47조 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월송동주민센터	월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4]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2항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직무분야
		소 계	시 정 담 당 관	미 디 어 담 당 관	문 화 관 광 과	교 육 체 육 과	기 업 경 제 과	도 시 정 책 과		소 계	건 강 과	농 정 유 통 과	축 산 과	소 계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총 계	15	10	1	1	2	3	1	2	1	3	1	1	1	1	1		
일반직 소계	15	10	1	1	2	3	1	1	1	3	1	1	1	1	1		
5급 소계	2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1										기업유치 1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의료분야 1
6급 소계	4	2		1	1					2		1	1				
지방행정주사	2	2		1	1												시정홍보 1 관광사업 1
지방행정· 농업주사	2									2		1	1				농산유통지원 1 한우브랜드육성 1
7급 소계	5	4			1	1		2						1	1		
지방행정주사보	3	2			1	1								1	1		축제 1 평생교육사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 녹지주사보	1	1						1									도시조경 1
지방행정 시설주사보	1	1						1									공공디자인 1
8급 소계	3	3	1			2											
지방행정서기	3	3	1			2											외국어 통역 1 평생학습 2
9급 소계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속기사 1

[별표 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 (제49조제3항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비고
		소계	시 민 봉사과				소계	응진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	
총 계	7	3	3	-	-	-	4	1	1	1	1	
8급 소계	2	1	1	-	-	-	1	1	-	-	-	
지방행정서기	2	1	1	-	-	-	1	1	-	-	-	
9급 소계	5	2	2	-	-	-	3	-	1	1	1	
지방행정서기보	5	2	2	-	-	-	3	-	1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생략)</p> <p>② 미디어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지역 정보화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 12. (생략)</p> <p>14. ~ 24. (생략)</p> <p>25. 그 밖에 미디어 홍보정책, 공보, 정보화, 통신에 관한 사항</p> <p>제12조(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p>	<p>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 총괄, 공주시 상징물(BI, CI, 마스코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5. ~ 13. (현행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 <p>15. ~ 25. (현행 제14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p> <p>26. ----- <u>브랜드 운영, 공보</u>-----</p> <p>제12조(복지지원과) -----</p>

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 해소를 통한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

2. ~ 12. (생략)

13. 새터민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4. · 15. (생략)

16. 여가·레저 활동 육성 지원

17. (생략)

제14조(회계과) 회계과의 설치 목적은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출예산의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합리적, 생산적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조직의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시비 및 국·도비 재배정분지출

----- . -----

2. ~ 12. (현행과 같음)

13. 북한이탈주민-----

14.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14조(회계과) -----

----- . -----

2. ~ 5. (생략)

<신설>

6. ~ 16. (생략)

제15조(세무과) 세무과의 설치 목적은 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명정대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 세정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2.·3. (생략)

4.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5. ~ 15. (생략)

제16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의 설치 목적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축제 운영으로 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한 예술진흥정책 수립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 23.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자금 배정

7. ~ 17. (현행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제15조(세무과) -----

-----.

2.·3. (현행과 같음)

4. ----- 수립

5. ~ 15.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관광과) -----

-----.

2. ~ 23. (현행과 같음)

24.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 관리

25. ~ 32. (생략)

제18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
의 설치 목적은 학교 교육 지원
및 시민 평생교육을 통해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아
울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량한 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체육지원, 체육시설에 관
한 사항 기획·조정

2. ~ 19. (생략)

20. 그 밖에 교육정책, 시민교
육,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
한 사항

제19조(안전산업국) 안전산업국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
장, 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 수도
과장, 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삭 제>

24. ~ 31. (현행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와 같음)

제18조(교육체육과) -----

----- 시민체육의
진흥으로 체력증진, 건강한 정
신 함양 및 시민생활을 할 ----
----- 지원하는 데

2. ~ 19. (현행과 같음)

20. ----- 평생교육-

제19조(안전산업국) -----

----- 건설과
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
토지과장-----

----- 지방

녹지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의 설치 목적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창업, 유치,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균형 있는 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기업, 소상공인 등)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조정

2. ~ 38. (생략)

<신설>

<신설>

39. · 40. (생략)

41. (생략)

제22조(건설과) 건설과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경제과장, 환경자원과장,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제21조(기업경제과) -----

----- 경영안정 -----

경제인 활동-----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지원 -----

2. ~ 38. (현행과 같음)

39. 마을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0.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 42. (현행 제39호 및 제40호와 같음)

43. (현행 제41호와 같음)

제22조(건설과) -----

- 편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에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2. ~ 9. (생략)
10.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목적 외 사용승인
11. ~ 29. (생략)

제24조(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의 설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9. (현행과 같음)
10. -----농림축산식품부-----

11. ~ 29.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시정책과) -----

----- 증진하며 -----

2. ~ 30. (생략)

제26조(교통과) 교통과의 설치 목적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략)

3.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무

4. ~ 6. (생략)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 관리자 및 차고시설 관련 사무

8. ~ 12. (생략)

13. 공공·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14. 불법 운행, 불법 주·정차 차량에 관한 사무

15. 주정차 지도·단속 및 견인에 관한 사무

16. ~ 27. (생략)

28. 그 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2. ~ 30. (현행과 같음)

제26조(교통과) -----

2. (현행과 같음)

3. -----
-----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7. -----
----- 사항

8. ~ 12. (현행과 같음)

13. ----- 관
리에 관한 사항

14. -----
----- 사항

15. -----
-- 사항

16. ~ 27. (현행과 같음)

28. ----- 교통행정, 교통안전,

과에서 담당한다.)

16. (생략)

제37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농정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9조(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추진 등 직불제 사업 관련 업무

16. (현행과 같음)

제37조(소장의 직급)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제38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농촌지도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39조(농정유통과) -----

1. ~ 17. (현행과 같음)

18. ----- 사업에 관한 사항

19. ~ 35. (생략)

36. 그 밖에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37. (생략)

제41조(농촌진흥과) ① 농촌진흥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공주 밤의 다양한 활용법을 연구 개발하여 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농촌체험사업과 관련된 농촌 6차산업화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사회적기업 제외)

23. 지역 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공동일자리, 사회적 기업은 제외한다)

24. ~ 36. (생략)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기

19. ~ 35. (현행과 같음)

36. ----- 정책, 농업 지원, 농업유통 등--

37. (현행과 같음)

제41조(농촌진흥과) ① -----

-----.

1. ~ 21. (현행과 같음)

22. ----- 지원-----
----- 기업, 마을 기업 --

23. ----- 기업, 마을 기업--

24. ~ 36. (현행과 같음)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

회 확대,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소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문예회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야외공연장, 어린이 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2. ~ 12. (생략)

13. 고마시설 관리 운영(다만, 기본 운영방안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립 후 인수한다.)

14. (생략)

--

2. ~ 12. (현행과 같음)

13. 고마시설 관리 운영

14. (현행과 같음)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5)	529(1)	17	171	56	225(4)	22(2)	127(1)	76(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58(5)	520(1)	17	140	56	225(4)	22(2)	127(1)	76(1)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3	1	2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4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5	11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7					7		7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5					5	1		4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6급 소계	251	148	3	39	14	47	5	28	14
지방행정주사	70	50	2		5	13	1	7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진료주사	12			12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6	5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20	5			1	14	2	7	5
지방행정·전산주사	3	3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8	5			3				
지방행정·농업주사	10	1		5		4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4	4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30	27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4					4	1	2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5	2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3	3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3	4		1	1	7	1	6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7급 소계	288	172	4	37	15	60	5	34	21
지방행정주사보	72	51	3	2	3	13	2	3	8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3	2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7	5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3			3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5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2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8	5	1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1	16			1	4	1	2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3	2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8급 소계	225	118	3	43	5	56	5	33	18
지방행정서기	44	26	3		1	14	1	6	7
지방세무서기	10	10							
지방사회복지서기	12	4				8	1	6	1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5	2		2	1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7	10			1	6		6	
지방행정·전산서기	2	2							
지방행정·세무서기	10	1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4	9				5		4	1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7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1	3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20	15				5		3	2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간호서기	9			9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3	2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운전서기	7	7							
지방위생서기	2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2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9급 소계	136(5)	52(1)	4	15	19	46(4)	6(2)	23(1)	17(1)
지방행정서기보	23(5)	5(1)				18(4)	3(2)	9(1)	6(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9	2				7	2	2	3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9	2				7		1	6
지방행정·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3	1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1		5		5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서기보	8	6		1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3	17	1	2	3				
지방위생서기보	7	2		1	4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지방사무운영서기보	9	3		2	3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연구직 계	7	6		1					
지방학예연구사	4	4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2			2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